

(1) 보험(의료·개호)

① 의료보험

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어떤 보험으로든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.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부상이나 질병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**공적 의료보험으로 모든 의료비가 보험처리 되는 것은 아니다.**

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‘건강보험’, ‘국민건강보험’, ‘후기고령자 의료제도’의 3 종류가 있습니다.

A 국민건강보험

가입 대상: 회사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(자영업,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등)
의료비 자기부담 비율:

0 세~초등학교 입학전 20%

초등학교 입학후~69 세 30%

70 세~74 세 20%(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: 30%)

※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,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소액으로 분할지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
수속이나 보험료 등, 자세한 내용은 국보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

B 건강보험

가입 대상: 건강 보험을 적용한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
의료비 자기부담 비율:

0 세~초등학교 입학전 20%

초등학교 입학후~69 세 30%

70 세~74 세 20%(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: 30%)

수속이나 보험료 등,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.

C 후기고령자 의료제도

가입 대상: ① 75 세이상의 사람

② 65~74 세의 광역연합이 인정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

의료비 자기부담 비율: 10%(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: 30%)

수속이나 보험료 등, 자세한 것은 국보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

7. 보험(의료·개호)과 연금



※주소가 변경되었거나, 자녀를 출산했을 때,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,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등,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는 회사나 관청에 알려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변경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국보연금과에 신고해 주십시오.

★수속 및 문의

국보연금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21 ~ 2129 , 2197 ~ 2199)

② 개호보험

노화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, 안심하고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가입 대상: ① 65 세 이상의 사람

② 40~64 세로 의료보험(건강보험, 국민건강보험)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

※주민표를 가진(일부 예외 있음) 외국인도 대상입니다.

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:

①

-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치매증상 등으로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
-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,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

②

- 노화가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의 사람

자기부담 비율: ① 의 사람 10%~30%(소득에 따라)

②의 사람 10%

이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

<재택 서비스>

- 방문 개호(홈헬프 서비스)
- 방문 간호
- 방문 목욕 개호
- 방문 리허빌리테이션
- 시설 방문 개호(데이 서비스)
- 단기 입소(쇼트 스테이)
- 복지 기구 대여 등



<시설 서비스>

개호노인 복지시설(특별양호 노인 홈)등

<지역밀착형 서비스>

치매증상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(그룹 홈)등

★문의

개호보험과

7. 보험(의료·개호)과 연금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61 ~ 2164 , 2167 ~ 2169)